

# 환경법규

환경부공고 제2015-571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15년 8월 5일

### 1. 제안이유

조류의 피해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고, 수질자동측정기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 근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설치비·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민간단체의 활동 범위와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민간단체의 설치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폐지(제10조의3 삭제)

개최실적 및 정책활용도가 낮은 본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논의하도록 함.

#### 다.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매립 시 허가제도 개선(제18조 삭제)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공공수역 내 점용 등 허가 시 수질오염 방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함.

#### 라. 수생태계복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수생태계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생태계복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복원사업이 하천 연속성 및 수생태계 다양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마. 조류피해예방 범위확대(제29조 삭제, 안 제21조의5 신설)

호소에 국한된 조류피해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여 낙동강 등 하천본류의 취·정수장 피해를 예방함.

#### 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규정 등 측정기기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9 신설)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등록 규정을 마련함.

- 사. 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내용 반영여부 확인절차 등 마련(안 제49조제6항 및 제50조제4항 신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본·실시계획 승인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정하고 운영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아.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안 제52조의2 신설)  
각종 개발·산업·농업 등에 기인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자.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기준 도입(안 제61조의2 신설)  
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설치신고를 하고 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환경부 공고 제2015-593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지자체 오염도검사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 보호 및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공고일을 현행 주민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기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실내공기질 의무 보수교육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

- 1) 모든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 2)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시설은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개선

#### 나.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조정(안 제7조제3항)

- 1)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현행 주민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